

부속서 I

관세 양허표

브루나이다루살람

두주

1.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브루나이다루살람의 2012년 수입관세명령(이하 이 양허표에서는 “관세명령”이라 한다)의 상응하는 품목식으로 표현된다.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관세명령의 일반 주해,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.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관세명령의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,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관세명령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.
2. 이 양허표에서, 통화단위로 표시된 관세율은 브루나이 달러의 가장 근접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.
3. 이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 “U”로 표시된 세번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된다.